

#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노동부고시 제1995-6호—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1994-45호, '94. 10. 21.)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5년 2월 23일  
노동부장관

## 건설공사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제12조 제1항 중 “다만, 당해 공사금액이 4,000만원 미만이거나 전국 도서지방(제주도 및 연육교가 설치된 지역을 제외한다)은”을 “다만, 당해 공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사금액이 4,000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2. 공사기간이 3월 미만인 건설공사
3. 전국 도서지방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제주도 및 연육교가 설치된 지역 제외)
4. 기타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건설공사(건설업자인 사업주가 공사계약시 고시내용을 제시함)

제12조 제2항 중 “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로 구분한다.”를 “전기·전기통신공사로 구분한다.”로 한다.

제15조 중 “과학기술처장관이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기초로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이 정하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기초로 하되 별표 4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기술지도 수수료 기준

기술지도구분	수 수 료
정기기술지도	안전관리비 총액의 10% 이하
전담기술지도	안전관리비 총액의 15% 이하

\*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는 5% 이내의 범위에서 증가시킬 수 있음

## 부 칙

-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은 1995년 3월 1일 이후 계약된 공사에 한하여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노동부고시 제

1994-45호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계상된 안전관리비에 대하여는 그에 의한다.

**노동부 해설**

노동부는 3월 1일부터 각종 사고가 빈발하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건설안전기술사 등 전문인력과 안전성을 진단할 수 있는 초음파탐상기 등 특수장비를 갖춘 민간 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기술지도를 받도록 하기 위해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을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 산업재해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건설재해의 대폭적인 감소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민간전문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의 인력으로는 3,000여 개의 대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재해예방지도를 담당할 수 있을 뿐 전국 각지에 산재한 중·소규모의 37,000여개 현장은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93년의 경우 공사금 20억원 미만인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전체 건설재해 26,129건의 57.3%인 14,981건이 발생하여 재해율 2.43%로 건설업 평균재해율 1.44%보다 월등히 높은 실정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고 현장이 전국각지에서 수시로 시작되고 끝나는 관계로 지방노동관서나 산업안전공단의 지도감독이 미흡하여 안전관리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은 월1회 이상 전담기술지도를 받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사업을 활성화토록 하였습니다.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중규모 건설현장은 분기에 1회 이상 정기기술지도를 받도록 하고, 대규모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공사착공 30일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안전

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기술지도에 필요한 비용을 안전관리비중에 서 사용토록 하여 건설업자의 새로운 경제적 부담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노동부가 중·소 건설현장에 대해 기술지도를 받도록 한 것은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라 공사금액의 약 1.5%를 안전관리비로 계상토록 의무화(’90년 입법)하였으나 건설업자가 이를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사용하지 않고 타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부당 이득으로 취급하고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산업재해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지도에 필요한 비용은 발주자가 공사금액에 계상해 주는 안전관리비 중의 일부를 사용토록 함으로써 건설업자에게는 새로운 경제적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인 재해예방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기술지도는 인력 장비를 갖춘 전문민간기관이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민간기관은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단체를 복수로 지정하여 재해예방 기술지원능력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양질의 기술지도가 행해질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민간단체로부터 재해예방기술 지원을 받는 건설현장에 대하여는 가급적 지방노동관서 또는 산업안전공단의 지도감독을 면제할 방침입니다.

◆ 기술지도 수수료는 안전관리비의 10~15% 미만으로 하되 여러 단체를 지정하여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였습니다.

**기술지도 수수료**

구 분	수 수 료
전담 기술 지도	안전관리비의 15% 미만
정기 기술 지도	안전관리비의 10% 미만

\* 전기 및 전기통신공사는 안전관리비 자체가 순수건설공사의 1/2밖에 안되므로 수수료를 5% 범위내에서 중액시킬 수 있도록 하였음